

제 76

행정명령(EXECUTIVE ORDER)

행정법 제6조에 의거한 지명

2012년 11월 13일 본인은 공익사업 시설 및 이의 규제와 관련된 다수의 문제를 연구, 검토, 조사, 확인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제73호를 발령하였습니다(“위원회”).

본 위원회에는 증인을 소환하고 출석을 강제할 권한; 선서 또는 확인을 시행하며 선서 하에서 증인을 조사할 권한; 조사, 검사 또는 검토에 관련된 것으로 또는 중대한 것으로 간주되는 모든 장부, 기록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권한; 그리고 직무의 의무 및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기타 기능을 수행할 권한이 주어집니다. 이에 본인은 행정법 제6조의 권한에 의거 이 위원회에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본인이 선임한 자들에게 주어지거나 부여될 수 있는 모든 권능과 권한을 주고 부여합니다.

위원회는 두 명의 공동 위원장을 포함해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.

이에, 본인 ANDREW M. CUOMO 뉴욕 주지사는 행정명령 제73호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와 관련하여 행정법 제6조를 포함해 뉴욕주의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.

1. 소환장 발부는 두 공동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요구한다.
2. 위원회는 두 공동 위원장의 동의가 있을 시 행정법 제6조에 따라 위원들에게 제공 또는 부여된 권능과 권한의 행사를 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.

2012년 11월 20일 Albany시에서 주 옥새 및 본인의

자필로 서명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